

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(제5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	병과
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		○ 육군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병과[인사과(지휘관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),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] 및 「군인사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정과 ○ 해군(해병대는 제외한다)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본병과(조함과,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) 및 「군인사법」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한다) ○ 해병대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본병과(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) ○ 공군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병과(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) 및 「군인사법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무행정만 해당한다)
예비전력 관리기구	동원지원단, 예비군훈련대, 장비·물자 관 리대의 장비관 리관 등	○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군의 기본병과 ○ 「군인사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병과 중 육군 의정과와 해군·공군 의무과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해군의 경우 의정, 공군의 경우 의무행정만 해당한다)
	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	○ 육군: 보병과, 포병과, 기갑과, 공병과 ○ 해군: 보병과, 포병과, 기갑과, 공병과